

	<h2 style="margin: 0;">학생회 회칙</h2>		규정번호	3-4-9
			제정일자	1985.05.28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 .9	총페이지	8

<전 문>

대학은 진리와 자유에의 끝없는 탐구속에서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학문 연구와 실천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대학의 이념은 어떠한 반지성적 반민주적인 힘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대학인의 양도될 수 없는 권리와 의무이다. “성실, 근검, 박애”라는 교시하에 진리를 실천하려는 젊은 지성인으로서 무궁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뿌리 내려온 우리 동양인은 전문 기술인으로 산업사회에 기여하며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전 동양인은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립이 필요불가결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학도호국단 체제를 전면 폐지하고 학원의 자율적 자치기구로써 총학생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전 동양인의 총의를 모아 총 학생회칙을 1985년 6월 29일로 제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양미래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대학인으로서의 진리 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케 하고 개인의 발전과 민족번영의 일익을 담당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아래 본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기간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를 둔다.

제7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
3. 기타 대학인으로서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의 학생자치 활동

제8조 <삭제>

제9조(효력정지) 본 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하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의 개정 및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 회장이 겸임한다. 단, 총학생회장 탄핵 시는 대의원 의장이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 ①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나 총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탄핵과 회칙 개정에 관한 것은 전체 회원의 투표에 부친다.(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것은 재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재적회원 2/3이상의 투표와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대의원총회

제14조(지위 및 목적)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학우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총학생회 이하 다른 기구들이 올바른 정책과 노선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구들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심의하여 감사를 하며 학생 자치적인 의견수렴과 대학의 자주화, 긍정적인 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각반대표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상임위원, 반대표, 집행위원회 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 임원은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인으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익년 8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장 부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9조 3항의 경우 대의원 의장 임기는 4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선출) ① 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단, 가부 동수일 경우 재투표한다.)

② 서기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의원의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의장의 업무와 권한) ①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학생회 회장 탄핵시에는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학생회장 탄핵결정시 즉시 해임하고 이를 공고한 후 회칙에 준한다.

④ 제31조 3항의 경우에는 대의원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19조 (임원의 의무)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대표하며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8조 4항의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의원 의장이 된다.

④ 의장유고시 그 권한은 기획 상임위원이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초와 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 총 학생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의장은 이를 소집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 위원 2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장은 이를 소집한다.

⑤ 대의원총회 소집은 5일전에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21조(임무 및 권한) 대의원총회는 다음각 호와 같은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 승인권
2. 예산, 결산의 승인권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5. 회장,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당 책임자의 불신임 결의권
6. 집행위원회 각 부서장 출석 요구권
7. 예비비 지출 의결 동의권
8. 학생의 복지를 위해 학교 당국 및 부속기관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권
9. 자율적 경비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권
10.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11. 복지 수익금에 대한 감사권
12.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부의장 심의 인준 권한

제22조(의결) ① 제21조의 제4항 및 제5항은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항이외의 항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1조 제10항은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무)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심의기한)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제반 안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예산안은 집행 위원회 동의없이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제25조(상임위원회) ① 대의원 총회의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학과별 상임위원은 직선으로 1인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의장에 출마할 수 없다.
- ④ 상임위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한다.

제26조(상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① 각 학부(과) 사이에 원활한 학생 생활이 되도록 조정 및 협동하는 임무를 가진다.

- ② 집행부의 각 부서의 업무를 감사한다.
- ③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전원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상임위원회는 대의원 정기 총회시 집행부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⑤ 대의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전의 심의
- ⑥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권. 단, 각 소속학과의 평대의원들과 같이 승인한다.

제27조(상임위원회의 임기) 9월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

제 4 장 집 행 기 관

제 1 절 총학생 회장

제28조(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29조(임기) ① 선출된 익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제31조 제3항의 경우에 임기는 4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30조(자격) 총학생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학기 성적이 B0 학점 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대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1개월이 경과된 자

제31조(선출) ① 총학생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약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총학생회장,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총학생회장이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의장이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32조(임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의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 단, 여학생부장은 여학생자치위원장이 겸임한다.
2. 회장은 각부서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3. 회장은 각부서의 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4. 회칙개정은 대의원 총회에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총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회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7. 제18조 제4항의 경우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8.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3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단, 잔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31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2 절 집행부서

제34조(부서) 학생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산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본회의 서무, 회계 및 회무를 각종 총괄하며 제반 사업의 조정을 담당한다.
2. 기획부 : 집행위원회 제반 사업의 기획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3. 사회부 : 동아리, 취미, 오락 활동 및 학내 집회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4. 학술부 : 교양 및 교지 편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 홍보부 : 본회의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여론조사 사업과 대외 교류 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6. 체육부 :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담당
7. 복지부 : 집행위원회 제반사업의 복지 및 학생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여학생부장은 여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35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용 기구이다.

제36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집행부의 각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37조(임무 및 권한)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비를 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4.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5.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한다.
6.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3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9조(의결) 의사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동아리회

제40조(구성) 본교 내에 등록된 동아리회에 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1조(기능) 동아리회는 본 대학 자치기구으로써 학생상호간의 친목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취미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2조(운영) 각 동아리회의 자치 규약에 따른다.

제 5 장 학생위원회

제43조(목적) 본 학생회의 건전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둔다.

제44조(구성) 학생위원회는 교학처 학생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수 약간 명으로 한다.

제45조(기능)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 자치 활동의 지도육성
2.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지도조언
3.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도
4.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지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46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총학생 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

제47조(재정관리) 본회 회비의 수납 관리는 학교 당국이 감독하게 하고 인출 및 집행은 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총무부에서 인출한다.

제48조(예산의 편성 및 심의) ① 본회의 회비는 집행 위원회에서 편성 책정하며 학생회장은 12월 말까지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상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는 예산 집행일자로부터 20일 이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상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업 심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심의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제49조(경정예산) 예산 설립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5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제 1기와 2기로 나누어 행하고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학생회 준비위원회) ① 학도호국단 체제를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1985년 5월 28일자로 구성된 “학생회 발기 준비위원회”에 의하여 본 회칙을 제정한다.

② 자율적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회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사항을 논의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 준비위원회는 회칙 제정 확정후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④ 본회칙이 제정 공포되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해체한다.

제2조(최초의 선거) ① 최초의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중 20명을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있는 반에서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 위원장, 부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최초의 선거 방법은 학생회 선거 규약에 따른다.

③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즉시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 일정을 공고 한다.

부 칙

- (1) 이 회칙 개정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시행일) 이 변경 회칙은 198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학생회 회칙은 이 회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